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37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5
1. 법 제정 필요성	5
2. 제정안의 체계	11
IV. 조문별 검토의견	14
1. 제명	14
2. 제1장 총칙	15
가. 목적	15
나. 법인격	16
다. 설립 및 등기	17
라. 정관	19
마. 대학동물병원의 명칭 및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21
3. 제2장 사업 및 운영	22
가. 사업	22
나. 책무	24

4.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26
가. 임원과 그 임기	26
나. 이사회	32
다. 병원장	34
5. 제4장 조직 및 재정	39
가. 직원	39
나. 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수의인력 양성 지원	43
다.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48
라. 출연 또는 보조	50
마. 회계연도	53
6. 제5장 감독 및 보칙	55
가.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55
나. 감독	58
다. 「민법」의 준용	61
7. 제6장 벌칙	62
8. 부칙	63
가. 시행일	63
나. 경과조치	64
다. 다른 법률의 개정 가능성	66
라. 그 외 부칙의 추가 규정 필요성	71

※ 참고자료

[참고] 유사 입법례의 제정 당시 부칙과 제정안의 부칙 비교	75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5. 13.
3.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학 교육·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 및 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의학 발전,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의학 교육·연구 및 진료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대학동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도록 하며,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대학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대학동물병원이 임상실습 교육, 전공의 수련,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교육·연구·공공수의료 기능을 수행 하도록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마. 대학동물병원이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수련 ·연구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 발생 시 방역·진단 등에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안 제8조).

바. 대학동물병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고,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수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을 두고 임명 절차 및 권한,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여 대학동물병원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함(안 제12조).

아. 임상교육·진료·연구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원의 병원 업무 겸직을 허용하는 등 교육·연구 연계 기반을 마련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가축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의 수의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및 그 밖의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등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8조 및 제19조).

타. 대학동물병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안 제21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법 제정 필요성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에게 동물병원 개설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수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0개 대학에서 동물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분원 형태로 대학 본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도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수의과대학 및 부속 동물병원 설치 대학 현황 】

연번	대학	설립구분	병원 소재지	권역	입학정원 (학부)
1	서울대학교	<u>국립대학법인</u>	서울 관악	서울	40
2	건국대학교	<u>사립대학</u>	서울 광진		69
3	강원대학교	국립대학	강원 춘천	강원	40
4	충남대학교	국립대학	대전 유성	충청	54
5	충북대학교	국립대학	충북 청주 (분원: 세종)		46
6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	경남 진주	경상	50
7	경북대학교	국립대학	대구 북구 (분원: 경북 상주)		57
8	전북대학교	국립대학	전북 익산	전라	50
9	전남대학교	국립대학	광주 북구		50
10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제주 제주시	제주	40

※ 주1: 경북대학교는 상주 분원을 두고 있으나, 현재 동물병원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주2: 경상국립대학교는 2027년 6월 이후로 부산 남구에 동물병원을 운영할 예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현재 이들 대학에서 설립한 동물병원(이하 “대학동물병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음에 따라, 대학동물병원은 각 국립 대학 또는 학교법인과는 경영·조직 등이 분리되지 않은 채 단순히 부속 동물병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대학동물병원이 수의학에 대한 교육·연구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 진료업무만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동물병원과 구분됨에도,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음에 따라 「수의사법」에 따른 일반 규정만이 적용될 뿐, 교육·연구 기능에 관하여는 규정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설치·운영과 교육·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대학동물병원을 제정안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② 대학동물병원의 사업·임원 등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정하며, ③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 기반 조성 및 수의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현재 인(人)의료 분야에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이 이들 유사 입법례의 구조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

1) 특히, 제정안이 대학동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한 것은 이들 유사 입법례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그 밖의 국립대학(치과)병원을 2026년 8월 20일부터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대학동물병원이 각 대학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서 설립·운영됨에 따라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대학동물병원을 동물 진료업무만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동물병원과 구분함에 따라,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므로,²⁾ 국립 및 사립대학의 동물병원이 지니는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대학동물병원이 대학과는 구분되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이들이 대학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도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수용 시 각 대학동물병원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대학동물병원별 전환 준비 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 및 공공적 기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별도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529.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희망하고, 재직 중인 직원의 신분제에 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 역시 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제정안에 관하여는 대학동물병원의 운영 자율성 제고 및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특수법인 전환에 대한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안의 수용 여부 및 시급성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법률적용의 대상 범위에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을 포함할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그 외 국립대학과 구별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³⁾

【 수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유형별 비교 】

구분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	사립대학	사립대학법인
법적 지위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기관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나 법인격을 부여	민간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기관	사립대학 설립·경영을 위한 민간법인
설립 주체	국가 (교육부)	국가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민간발기인 (설립자)
법인 성격	법인격 없음 (정부조직 일부)	국립대학법인 (공법인)	법인격 없음 (학교법인 운영 시설)	학교법인 (비영리 사법인)

3)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학교 외에도 인천대학교가 있으나, 인천대학교는 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학병원 또는 대학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구분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	사립대학	사립대학법인
교직원 신분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민간인 (법인 임직원)	민간인 (사립학교 교직원)	민간인 (법인 임직원)
재정 성격	정부예산 +대학회계 *강원대: 대학회계 + 자체수입 *충북대:(청주)학교 기업회계+(세종) 대학회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등록금수입 +재단전입금	법인자산수익 +수익사업수입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국립학교 설치령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수의과 설치 대학	강원대학교 등 (8개교)	서울대학교 (1개교)	건국대학교 (1개교)	

※ 주 1: 대학 자체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나,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개정법률이 2026년 8월 20일 시행예정

※ 주 2: 대학에는 이외에도 국립대학(서울시립대학교 등), 국립특수대학(한국농수산대학교 등) 및 특수법인대학(KAIST 등)이 존재하나, 이들 대학에는 수의과대학 및 동물병원이 미설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재가공)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인의료에 관한 유사 입법례 역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그 외의 국립대학(치과)병원과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유사 입법례 】

분야	법률	적용 대학	소관부처
일반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제외)	현행) 교육부 예정)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부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제외)	현행) 교육부 예정)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부

※ 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개정 법률이 2026년 8월 20일 시행예정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다른 국립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경우를 참고할 때,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을 제정안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경우, 다른 국립대학(치과)병원과는 달리 법률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은 채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역시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의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⁵⁾

4) 다만,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67호, 제2203575호) 및 장중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68호, 제2203675호)]을 심사 중에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동물병원의 소관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5)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2. 제정안의 체계 및 구성

제정안은 6개 장 25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제1장 “총칙”의 6개 조에서 법률의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특수법인 대학동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② 제2장 “사업 및 운영”의 2개 조에서 대학동물병원의 사업과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③ 제3장 “임원 및 이사회”의 4개 조에서 대학동물병원의 임원, 이사회와 병원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④ 제4장 “조직 및 재정”에서는 대학동물병원의 직원, 국가의 수의과대학 학생·전공의 지원 및 국유재산 무상 양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및 대학동물병원의 회계연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⑤ 제5장 “감독 및 보칙”에서는 병원장의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도·감독 및 「민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⑥ 제6장 “벌칙”에서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⑦ 부칙 2개 조에서는 각각 시행일(공포 후 1년)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정안의 체계 및 구성은 대학동물병원을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되, 추가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반적으로 인의료와 관련된 국립대학병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유사한 조문 구성 및 내용인 것으로 보임.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제정안의 비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안(「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제3조(등기)	제3조(등기)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제5조(설립)	제5조(설립)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제6조(대학동물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사업 및 운영
제8조(사업)	제7조(사업)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8조(대학동물병원의 책무)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10조(임원)	제9조(임원)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제14조(대학병원장)	제12조(대학동물병원장)
	제4장 조직 및 재정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제13조(직원)
제16조(임상교수요원)	
제17조(겸직)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수의인력 양성 지원)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제20조(회계연도)	제17조(회계연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안(「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제5장 감독 및 보칙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3조(감독) 제24조(「민법」의 준용)	제18조(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제19조(감독) 제20조(민법의 준용)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다만, 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비교할 때 크게 ① 임원의 직무, ② 임상교수요원 및 ③ 겸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각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중 겸직 조항의 경우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의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른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연구·진료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학동물병원에서의 직무 겸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부칙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는 당해 검토보고서의 부칙 부분에서 검토하도록 함.

IV.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제정안은 이 법의 제명을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으로 하려는 것임 (안 제명).

제 정 안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현재 인의료에 관한 유사 입법례에서는 그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제명을 이들 유사 입법례에 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을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및 사립대학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대학동물병원에 관한 법률로서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명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제1장 총칙

가. 목적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수의학의 발전과 동물복지의 향상 및 공중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동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를 통하여 수의학의 발전과 동물복지의 향상 및 공중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등 교육·연구와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를 통하여 ① 수의학 발전, ② 동물복지 향상 및 ③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동물병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 효과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이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참고하되, 동물병원의 특성을 추가한 것으로 보임.

나. 법인격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학동물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정안의 취지는 현재 수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각 대학에 부속한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대학동물병원을 대학과 구분하여 별도로 법인화하려는 것임.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법인인 대학동물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한편, 대학동물병원이 대학 본부와 구분되어 경영상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각 대학동물병원이 대학 본부와 구분될 경우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현실적으로 제정안의 부칙에서 제시하는 전환 기간인 1년 내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설립 및 등기

제정안은 특수법인 대학동물병원의 설립과 그 설립등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3조(등기)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제3조(등기) ① 대학동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설립) ① 대학동물병원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동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준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이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分院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본원 외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정관

제정안은 특수법인 대학동물병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정관) ① 대학동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대학동물병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인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제정안이 정관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대학동물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는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대학동물병원 역시 국립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대학동물병원의 명칭 및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명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대학동물병원의 명칭 및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대학동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동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대학동물병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대학동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정안은 ① 대학동물병원의 명칭을 해당 대학명에 동물병원을 붙여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② 이 법에 따른 대학동물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해당 대학의 대학동물병원이 아님에도 동물병원 이름을 “OO 대학교 동물병원”과 같이 명명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하여, 동물 소유자 또는 보호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은 안 제21조에서 안 제6조제2항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제2장 사업 및 운영

가. 사업

제정안은 특수법인 대학동물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과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과 관련 연구 3의2. 의학과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제2장 사업 및 운영 제7조(사업) 대학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의학 교육을 위한 임상실습 및 교육 지원 2.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 3. 수의학 관련 연구 및 융합 학문의 교육·연구 4.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 5.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방역·진단 지원 6. 공중보건 향상과 유기동물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 정 안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정안은 특수법인인 대학동물병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서 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① 수의학 교육, 연구 및 전공의 수련, ② 동물진료, ③ 방역 및 진단 지원, ④ 공중보건 향상 및 유기동물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대학동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대학동물병원이 특수병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수의학 연구 및 동물진료 등의 업무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로 사업의 목적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이 수익사업 등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그 밖의 사업에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명시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같이, 법률에서 목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융합 학문”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제3호의2에서 규정하는 융합의학과 같이 다른 학문과의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을 의미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융합 학문이라는 용어만으로는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책무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책무 및 협력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	제8조(대학동물병원의 책무) ① 대학동물병원은 동물에 대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수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의 교육·수련과 수의학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동물병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검역·방역 및 진단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책무로서 ①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동물건강 및 복지 증진, ② 수의학 인력 교육·수련 및 수의학 연구 기반 조성, ③ 공공성·전문성 바탕의 성실한 기능·역할 수행, ④ 검역·방역 및 진단 업무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책무는 특수법인인 대학동물병원이 동물의료 증진과 수의학 연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서 적합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달리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서 제정안이 융합의학에 관한 사항을 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가. 임원과 그 임기

제정안은 특수법인 대학동물병원의 임원을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규정하는 한편,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9조(임원) ① 대학동물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동물병원의 이사장은 그 대학의 총장으로 하고, 사립대학에 설치된 대학동물병원의 이사장은 그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해당 대학동물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수의과대학장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정 안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해당 대학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④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수의학 및 공공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임원인 이사장,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 이사의 임명권자를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는 이사장이 아닌 소관부처의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동물병원이 특수법인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는 점과 대부분 국립 대학동물병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 역시 임명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대학 내부 인사만으로도 임명될 수 있으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당연직 외의 이사 중에 외부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역시 이를 규정한다면 대학동물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이 특수법인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재정지원 측면을 고려하여 당연직 이사로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같이 대학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서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⁶⁾가 국립대학(소속 공무원) 및 국립대학법인(임원)⁷⁾에도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적용됨에 따라, 이들이 설립한 병원의 임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 역시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이 설립한 동물병원의 임원에 대하여는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 한편,

추가적으로 사립대학이 설립한 동물병원의 임원의 경우에는 대학 동물병원이 민간동물병원으로서의 자율성 측면과 특수법인으로서 가지는 공공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달리 이사 및 감사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감사의 임기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짧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여섯째, 제정안은 임원의 자격,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을 규정할 뿐,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이사회

제정안은 특수법인 대학동물병원의 심의·의결 기구인 이사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13조(이사회)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 조직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	제11조(이사회) ① 대학동물병원에는 대학동물병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 관하여 구성, 심의·의결 사항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달리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감사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특히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다. 병원장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 병원장의 자격·임명·업무·임기 및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제12조(대학동물병원장) ① 대학동물병원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인 병원장 1명을 둔다. ② 병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병원장은 대학동물병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병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동물병원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병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병원장의 임명·업무·임기·해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다른 일부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가 병원장 직위에 의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달리, 수의사 자격자만이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제한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의 병원장 임명 규정 】

병원		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제10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12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제10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수의사 자격자는 대학동물병원이 수행하는 동물진료 및 수의학 연구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므로, 병원장 직위를 수행하기 적합한 측면이 있음.

다만, 병원장의 역할이 직접 일선에서 동물진료 및 수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동물병원의 조직을 운영하거나 경영·행정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면, 의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라도 병원장 직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학동물병원의 병원장 직위에 경영·행정상의 전문성 외에 반드시 수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이와 같은 자격 제한을 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자격 제한이 없음에도 대학동물병원(분원 포함) 병원장이 모두 대학교수이자 의사로 임명된 점 역시 참고할 수 있음.

【 대학동물병원별 병원장 현황(2026. 6월말 기준) 】

연 번	병원명	설립구분	병원장 현황			
			현재 임기	병원장 재직기간	교수 여부	수의사 여부
1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25.2.3.~'27.2.2.	1년4개월	O	O
2	건국대학교	사립대학	별도임기 없음	7년9개월	O	O
3	강원대학교	국립대학	'26.1.19.~'28.1.18.	2년5개월 (연임)	O	O
4	충남대학교	국립대학	'25.1.1.~'26.12.31.	1년5개월	O	O
5	충북대학교	국립대학	'25.3.11.~'28.2.29.	1년4개월	O	O
	(세종 분원)		'26.3.1.~'28.2.29	4개월	O	O

연 번	병 원 명	설 립 구 분	병 원 장 현 황			
			현 재 임 기	병 원 장 재 직 기 간	교 수 여 부	수 의 사 여 부
6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	'26.1.~'27.3.	6개월	○	○
7	경북대학교 (상주 분원)	국립대학	'25.7.1.~'26.6.30. (1년임기)	2년 (연임)	○	○
8	전북대학교	국립대학	'26.3.~'28.3.	3개월	○	○
9	전남대학교	국립대학	'25.3.~'27.2.	1년4개월	○	○
10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26.5.~'28.4.	2개월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둘째, 제정안은 병원장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서울대학교) 또는 소관 부처의 장관(그 외 국립대학)이 임명하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와 차이가 나타남.

【 유사 입법례의 병원장 임명 규정 】

병 원		치 과 병 원	
법률 제21351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21352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대학병원장) ③ 원장은 <u>이사회</u> 의 추천을 받아 <u>보건복지부장관</u> 이 임명한다.	제10조(대학병원장) ③ 원장은 <u>이사회</u> 의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 의 제청으로 <u>대통령</u> 이 임명한다.	제12조(치과병원장) ③ 원장은 <u>이사회</u> 의 추천에 의하여 <u>보건복지부장관</u> 이 임명한다. 이 경우 <u>이사회</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치과병원장) ③ 원장은 <u>이사회</u> 의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 의 제청으로 <u>대통령</u> 이 임명한다.

※ 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법률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예정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이는 대학동물병원의 병원장을 국가가 아닌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동물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대학동물병원이 특수병원으로서 지니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이 병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 달리 병원장을 상임 직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학동물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병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10개 대학동물병원의 병원장이 모두 관련대학의 교수 직위를 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장이 병원 업무와 함께 관련대학에서 강의·연구 등 교수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상임 직위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 달리 병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나, 대학동물병원에서 병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⁸⁾

8) 예컨대,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정관위임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진료부원장-소아진료부원장-공공부원장-행정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

5. 제4장 조직 및 재정

가. 직원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직원에 관하여 그 자격·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관련 대학 교원이 정관에 따라 대학 동물병원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教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조직 및 재정 제13조(직원) ① 대학동물병원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육·진료 및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 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련대학 소속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동물병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특수법인으로 함에 따라 그 직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의 자격·임용·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동물병원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경우 임상교수요원에게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⁹⁾ ② 대학병원에서의

경력을 관련대학에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학동물병원에서 행하는 임상교육은 관련대학과 연계되는 수의학 교육 기능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교원의 자격기준 등을 적용하고 관련대학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관련대학 소속 교원의 대학동물병원 겸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국립대학 소속 교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른 겸직 금지 제도가 적용됨.¹⁰⁾

그런데, 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겸업을 허용하여 법률 우위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같이 법률에서 별도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10개 대학동물병원(분원 포함)에 근무하는 353명의 교직원 중 113명(32.0%)이 공무원에 해당함.

9)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대학동물병원별 직원 현황(2026. 6월말 기준) 】

연 번	병 원 명	설 립 구 분	전 체 직 원 수	공무원 여부		교원 여부	
				공무원	비공무원	교원	비교원
총계			353	113	240	129	224
1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126	-	126	20	106
2	건국대학교	사립대학	62	-	62	15	47
3	강원대학교	국립대학	17	14	3	13	4
4	충남대학교	국립대학	22	14	8	11	11
5	충북대학교	국립대학	24	14	10	11	13
	본원(청주)		22	13	9	11	11
	분원(세종)		2	1	1	-	2
6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	17	15	2	12	5
7	경북대학교	국립대학	25	19	6	16	9
	본원(대구)		25	19	6	16	9
	분원(상주)		(미운영)				
8	전북대학교	국립대학	31	16	15	15	16
9	전남대학교	국립대학	14	13	1	10	4
10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15	8	7	6	9

※ 주1: 충북대학교 동물병원 본원(세종)의 경우, 상기 2명의 교직원 외에도 본원(청주)의 교직원 중 12명의 교직원(교원 11, 비교원 1)이 본원과 분원을 교대로 근무 중

※ 주2: 경북대학교는 상주 분원을 두고 있으나, 현재 동물병원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일부 재가공)

나. 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수의인력 양성 지원

제정안은 공공 분야 수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¹¹⁾에게 일정 기간 공공 분야 수의업무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수의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는 가축전염병의 방역 등 공공 분야의 수의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교육비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의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분야의 수의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비등의 지원 대상·규모·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① 「군인사법」에서는 장교·부사관 임용 후 일정 기간 가산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대학생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¹²⁾

11) 다만, 현재 인의료와 달리 동물의료 분야에는 전공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의료 분야 역시 최근 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5년 동안 공공분야에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비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¹³⁾

12)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 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증업법」에 따라 보증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채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11. 27. 시행 예정)

제31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27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3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3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제3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의무복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의사 면허를 내줄 때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15년 동안 업무에 종사할 것(이하 “의무복무”라 한다)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기간 공수의¹⁴⁾와 같이 가축방역 등의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의무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 제도를 통하여 최근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공공분야 수의업무 인력의 안정적 확보 경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의 수용에 앞서 수의과대학 학생에게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 제도의 실제 수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동 지원 제도를 제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동 지원 제도가 수의과대학 학생을 지원하여 가축방역 등 공공분야 수의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수의사 면허를 규정하는 「수의사법」이나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제정안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전공의는 수의과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대학 동물병원에서 수련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전공의란 본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지칭하는 용어로서,¹⁵⁾ 현재 동물의료 분야는 인의료와 달리 법률상의 전문의 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문의 제도가 신규 도입되지 않는 이상 법률에서 이들을 전공의로 지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다르게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¹⁶⁾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법적으로 수의 전공의 제도가 없어 관련 인력 지원을 검토하기 어려운 한편, 국가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기획예산처 등의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16) 참고로, 대학원 과정은 수의과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원(수의학과)에서 진행되므로 이들 대학원생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9조와 유사하게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대학원(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원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교육부는 동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재산과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현재 구조에서 일부 학과 또는 특정 조건 충족을 요건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정안은 국가가 대학동물병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대학동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동물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을 통하여 특수법인인 대학동물병원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한편, 유사 입법례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같은 사립대학동물병원 역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역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른 입법례에서는 국립병원¹⁷⁾, 의료 관련 공단¹⁸⁾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¹⁹⁾ 등 공공의료 부문에 대하여만 이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병원인 사립대학동물병원에도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에 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나,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① 국유재산특례를 해당 법률 별표에 규정된 법률만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해당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²⁰⁾

제정안의 수용과는 별개로, 실제로 당해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하는 별도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을 거쳐 제정안과 함께 의결될 필요가 있음.

17)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라. 출연 또는 보조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적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과 교육·연구 및 공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수의료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 2. 공공 수의료 및 방역 관련 진료 수행에 드는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동물병원이 자체 임용한 임상교육·진료 및 연구 인력과 전공의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안 제16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연구, 공공 수의료 및 방역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이 대학동물병원을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공공성을 가지는 동물의료체계와 수의학 연구에 관한 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안 제16조제2항은 대학동물병원이 자체 임용한 임상교육·진료·연구 인력 및 전공의에 대하여 그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을 통하여 대학동물병원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은 의무적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 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 회계연도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연도) 대학동물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회계연도에 있어 학년도가 아닌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²¹⁾)를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제정안에 따라 대학동물병원이 ① 대학과는 구분되는 특수법인인 됨에 따라 학년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감소하는 한편, ② 정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정부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²²⁾ 등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하게 각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를 정부와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1)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한편, 현재 대학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10개 대학은 모두 법률에서 학년도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도록 하여,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학년도인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²³⁾가 적용되고 있음.

【 대학 회계연도 관련 입법례 】

연번	대학구분	대학동물병원 운영 대학	관련 규정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개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법인회계 등)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학교의 <u>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 음 연도 2월 말일까지</u> 로 한다.
2	국립대학	강원대학교 등 (8개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⑤ 대학회계의 <u>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 일에 종료</u> 한다.
3	사립대학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1개교)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u>회계연도는 그 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u>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3)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
만,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 제5장 감독 및 보칙

가.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의 병원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① 사업계획 및 예산과 ② 사업실적 및 결산을 각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5장 감독 및 보칙 제18조(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병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 및 결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서류	제 정 안
--	--------------

제정안은 병원장이 이사회에 사업연도별로 사업계획·예산과 사업 실적·결산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학동물병원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내부적 통제 기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단순히 사업계획·실적 및 예·결산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뿐, 별도의 외부적 통제 기제는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대학동물병원이 공공성을 지니는 특수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소관 부처 장관을 통한 외부적 통제를 규정하는 방안에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⁴⁾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하게 국립대학병원을 별도 법인화시키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제정안과 달리 사업계획·예산서와 결산서를 소관 부처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경영 통제를 위한 외부적 통제 기제를 규정하고 있음.

24) 참고로,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재 정부조직으로서 정부 및 국회의 예산·결산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립대학 8개교에 부속한 대학동물병원에 대하여 별도 법인화에 따라 이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둘째, 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달리 결산서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제도가 전문성을 지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²⁵⁾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에 적용되는 한편, 개별법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소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특수법인에도 적용되고 있음.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나. 감독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동물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2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동물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 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 장관이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의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준하여 감독규정을 두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사립대학동물병원은 사적 자치와 대학의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회계·재산 보고의무는 과도한 감독이 될 소지가 있음.

반면에, 국립대학동물병원의 경우에는 특수법인에 관한 국가의 원활한 통제를 위하여 유사 입법례와 같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의 감독 규정 】

병원		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23조(감독) 보건 복지부장관은 대 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 <u>회계</u> 및 <u>재산</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필 요한 서류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교육 부장관은 대학병 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 고나 서류의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보건 복지부장관은 치 과병원을 감독하 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교육 부장관은 치과병 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 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둘째, 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학동물병원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장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닌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임명권자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독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유사하게²⁶⁾ 병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아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병원장 임명권자로서 감독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국립대학병원의 병원장을 소관부처의 장관인 교육부장관(2026년 8월 20일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

다. 「민법」의 준용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동물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의 설립·정관·사업·임원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법인도 「민법」상 법인의 일종이므로,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정안과 같이 「민법」의 재단법인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도 국립대학병원에 제정안과 동일하게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7. 제6장 벌칙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21351호('26. 8. 20.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정 안
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6장 벌칙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학동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안 제6조제2항에서 대학동물병원이 아닌 자가 동물병원의 이름을 “OO대학교 동물병원”과 같은 형식으로 짓거나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짓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정안과 같이 위반자에게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안 제21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유사 입법례와 같이 단순히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로 지칭하는 것이 보다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부칙

가. 시행일

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현재 10개 대학교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대학 부속 동물병원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 대학동물병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법률의 수범자가 제도 변화를 충분히 인지할 시간이 필요할 것인 한편, 제정안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의 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이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경과조치

제정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의사법」에 따라 이미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제 정 안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대학동물병원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의 동물병원의 권리와 의무는 설립된 대학동물병원이 승계한다. 다만, 대학의 사정으로 1년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현재 「수의사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 중인 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 대학동물병원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제정안은 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학동물병원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등기 시에 종전 동물병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설립등기의 유예를 허용하는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이와 같이 제정안 수용 시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과 별개로, 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각 대학동물병원이 제정안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다른 법률의 개정 필요성

제정안은 부칙에서 별도로 다른 법률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학 부속 동물병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대학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부속 병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 당시에도 부속 병원의 법인화에 따라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한 입법례가 있는바,

당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법률에서 대학 또는 대학의 장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특수법인화에 따라 정비가 요구되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현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특수법인화된 국립대학 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유사 입법례의 경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총 7개 법률로,

구체적으로는 ① 조세에 관한 3개 법률, ② 교직원 연금 및 공제에 관한 2개 법률, ③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1개 법률 및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1개 법률임.

이들 중 ① 조세 특례와 관련한 3개 법률은 별도로 조세 특례 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인 한편, 조세 특

례 부여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²⁷⁾²⁸⁾ 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동물병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조세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법률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세) 및 행정안전위원회(지방세)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② 교직원 연금 및 공제에 관한 2개 법률과 ③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1개 법률은 대학동물병원이 대학과는 구별되는 별도 특수법인이 됨에 따라 함께 개정이 요구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의 경우 이미 대학동물병원 및 그 직원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 법인화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보임.

한편, 사학연금법의 경우,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대학 중 사립학교로서 당연히 적용되는 건국대학교는 물론, 서울대학교 역시 이미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²⁹⁾ 이들 두 학교에 대하여는 별도 법인화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정안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이나,

2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그 외 국립대학 8개교의 경우, 이들 대학동물병원이 별도 법인화됨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하여 사학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이 검토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정안을 통하여 개정하더라도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 외,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1개 법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동물의료도 포함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개정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5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인용하는 다른 법률 】

연번	제명	인용내용 및 조문	비고
1	법인세법	- 대학병원이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규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사립대학병원 포함

연번	제명	인용내용 및 조문	비고
2	조세특례제한법	-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포함
3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립대학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규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병원 임원 및 직원에게 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제7조의2(회원자격)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시 해당 내용을 부칙으로 개정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 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을 규정하지 않음 - 2016년 1월 28일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립대병원에도 사학연금을 적용

연번	제명	인용내용 및 조문	비고
6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 기술육성법)	- 대학병원을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육성주체에 포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대학 포함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국립대학병원을 포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라. 그 외 부칙의 추가 규정 필요성

제정안은 부칙으로 ① 시행일과 ② 시행 후 1년 내 설립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이 현재 운영 중인 대학 부속 동물병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전환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경우를 참조하여 직원의 신분상 변화, 설립 비용 및 설립 당시의 예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나 설립준비 방법 등을 규정하는 추가적인 부칙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들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종전의 국립대학 부속 병원을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① 설립준비를 위한 설립위원 위촉, ② 설립 당시의 예산 지출 및 ③ 병원장·임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칙은 제정안이 현재 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서 운영 중인 대학동물병원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부칙의 규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제정 당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제정법률에 준하는 부칙을 규정하되,

추가적으로 당시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설치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을 해당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으로 보기 위한 경과조치와, ② 국립대학병원 내 치과진료처를 국립대학치과병원으로 분리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³⁰⁾

다만, 대학동물병원은 대학치과병원의 경우와 달리 현재 대학병원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과조치가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의 제정 당시 부칙과 제정안의 부칙 비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³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³²⁾	부칙 내용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 법률의 시행일 설정
제2조(국립대학교부속 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국립대학치과 병원 설립시 기)	- 기존 대학(치과)병원의 전환 설립 시기 규정
제3조(설립준비)	제3조(설립준비)	- 5인 이내 설립위원 위촉 -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장관 인가 획득
제4조(설립비용)		- 대학병원 설립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부담
제5조(국유 재산의 대부 등)		- 종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상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가 무상승계 - 승계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허용
	제4조(재산의 무상 승계)	- 관련대학병원 재산 중 치과진료처 소관 재산은 치 과병원이 무상승계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5조(채권·채무의 승계)	- 종전 병원의 권리·의무를 대학병원이 포괄승계 - 종전 치과진료처의 채권·채무를 치과병원이 승계

30) 해당 법률 제정 전, 치과대학이 설치된 국립대학 6개교 중 ①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치과병원을 설치하였고, ② 강릉대학교(現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치과병원을 설치하였으며, ③ 그 외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및 전북대학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내에 치과진료처를 두어 운영하였음(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검토보고서”, 20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³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³²⁾	부칙 내용
제7조(전입금 등의 교부)		- 전환 설립 당시 당해 병원 소관 전입금·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병원에 교부
제8조(설립당시의 예산)	제6조(경비의 지출)	- 전환 설립 시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 확정시까지 종전의 예산을 지출 가능
제9조(설립당시의 원장임명)	제7조(원장임명의 특례)	- 최초의 원장은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관이 임명
제10조(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 전환 설립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장관이 임명
	제8조(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 관련대학 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재직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시 이 법 시행 전 경력을 관련대학 교원 경력으로 인정
제11조(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 전환 설립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은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간주(단, 본인 희망 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가능) - 간주를 통해 재직하는 직원의 정년이 종전보다 짧아지지 않도록 경과조치 규정
	제9조(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전환 설립 당시 치과진료처 근무 직원등은 치과병원 소속 직원등으로 임명 및 겸직허가 된 것으로 간주
	제10조~제13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을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으로 간주 - 당해 병원의 정관, 직원등, 이사회를 각각 이 법에 따라 작성, 임명 및 겸직허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치과 관련 사항 삭제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제정법률 신규 반영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치과대학장은 부칙 제14조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장 임명 시까지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간주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또한 인용한 것으로 간주

※ 주: 음영 부분은 제정안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칙에 해당함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31) 법률 제4350호, 1991. 3. 8. 제정

32) 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정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자료

유사 입법례의 제정 당시 부칙과 제정안의 부칙 비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4350호, 1991. 3. 8. 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정)	제 정 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제2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기) 치과병원 설립 시기는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대학 동물병원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의 동물병원의 권리와 의무는 설립된 대학동물병원이 승계한다. 다만, 대학의 사정으로 1년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을 설립할 경우 치과병원별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원장의 임명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4350호, 1991. 3. 8. 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정)	제 정 안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재산의 무장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병원 재산 중 치과진료처 소관 재산은 치과병원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채권·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병원의 채권·채무 중 치과진료처 소관 사항은 치과병원이 승계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대학동물병원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u>이 경우 종전의 동물병원의 권리와 의무는 설립된 대학동물병원이 승계한다.</u> 다만, 대학의 사정으로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4350호, 1991. 3. 8. 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정)	제 정 안
		년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 다.
제7조 (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 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 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 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 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 병원 설립연도의 세입·세출 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 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당시의 예산) ①부 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 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 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 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 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 다.	제6조 (경비의 지출) ① 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따라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 될 때까지 해당 연도 관련대 학 병원 예산 중 치과진료부 소관 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 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 는 치과병원의 해당 연도 예 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 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원장 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 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 명한다.	제7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 에 따른 최초의 원장은 제11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대 학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 다.	
제10조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 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4350호, 1991. 3. 8. 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정)	제 정 안
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임상교수요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대학 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1조 (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 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련대학 병원 치과 진료처에 근무하는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으로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4350호, 1991. 3. 8. 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정)	제 정 안
	제11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 원의 정관은 이 법에 따라 작 성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치과병원장·의료요원 및 직원·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 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치 과병원장·의료요원·직원·임상 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이 법에 따라 각각 임명 및 겸직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 병원의 이사회는 이 법에 따 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 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 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 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 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또는 ”치과 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 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4350호, 1991. 3. 8. 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법률(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정)	제 정 안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치과대학장은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치과병원장 임명시까지의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